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271
----------	------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0월 20일 김인제 의원(찬성 20명)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인제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치매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입법 경제성과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
(안 제5조)
- 다.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7조)
- 라.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2025. 10. 28. ~ 2025. 11. 1.

I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전부개정안의 개요

- 현재 서울시의 치매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동 전부개정(안)은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치매 관련 조례들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의 조례 이해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전부개정(안)은 12개의 본칙 조문과 3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칙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제9조(운영의 위탁)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부 칙
제6조(실태조사)	제1조(시행일)
제7조(지원 사업)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경과조치)

2 검토의견

1) 이원화된 서울특별시 치매 관련 조례 통합 필요성

- 현재 서울시의 치매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음.
- 그런데, 2024년 조례 제정을 통해 이미 서울시 치매 관련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한정적 사항’만을 규정하는 조례가 별도로 존재할 실익이 적다고 사료됨.
- 아울러, 타 광역지자체(14곳)도 이미 ‘치매 관련 일반 조례’에 ‘광역치매센터’ 관련 내용을 ‘하위 조문’으로 구성하여 통합 운영중이며, 현재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3곳)만 ‘치매 일반 조례’와 ‘광역치매센터 조례’로 이원화하여 운영중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통합 조례 운영) (14곳)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이원화된 조례 운영) (3곳) : 서울, 전북, 제주

-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p.17)’에서도 “여러 자치법규에 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17)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자치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컨대 입법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입법 경제적인지, 어느 쪽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지, 어느 쪽이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 따라서, 동 전부개정(안)과 같이 서울시 치매 정책과 관련한 여러 자치법규를 하나로 통합·재정비하는 것은 그 입법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 편의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2) 주요내용 검토

① 제3조 (시장의 책무) 검토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동 전부개정(안) 제3조에 명시된 ‘책무 규정’은 상위 법인 「치매관리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관련 ‘책무 및 노력 규정’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 및 취지가 ‘상위법’에 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9)

시장 등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표현방식은 그 자치법규의내용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그 자치법규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이나 내용이 서로 모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검토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검토의견) 동 전부개정(안) 제4조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동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 전부개정(안)이 ‘서울시 치매정책’과 관련해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례’라는 점에서 그 조문 입법 방식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9)

1)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그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조례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조례가 기본조례의 성격이나 일반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조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두는 방식이다.|

입법례 ◉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검토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2. 치매관련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 3.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 훈련
- 4. 치매관련 연구사업
- 5. 치매인식 개선사업
- 6.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원
- 7.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 8.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및 후견사무 지원
-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 (검토의견) 동 전부개정(안) 제8조는 기존 「서울특별시 광역치매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업무)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전부 개정(안) 제8조에 그대로 이기한 것으로서, 동 전부개정(안)의 주된 입법취지인 ‘치매 관련 조례 통합·정비’에 부합한 개정이라 사료됨.

④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검토

-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 기구 · 장비 · 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3. 책임능력 · 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 (검토의견)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제2항에 따라 치매 관련 전문성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아울러,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3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함.
- 따라서, 동 전부개정(안) 제10조에 따라 향후 수탁을 원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 등을 입증 및 평가받은 후,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의안번호
327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인제 의원	2025.10.20.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시장으로 하여금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치매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광역치매센터의 위탁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안 제8조~안 제10조는 기존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기존 조례 폐지를 명시함(부칙 안 제2조)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10.20. 조례안 개정 제안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현행 「치매관리법」 체계 하의 이원화된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주민 이해의 증진에 따른 정책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는 바 동 조례안에 원안 동의함 ※ 현재 타 광역 자치단체(17개) 중 14개소는 통합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서울전북제주)만 이원화된 조례 운영 중		
대응방안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정신건강과	팀장	서하나(☎2133-7581)
			담당 민영란(☎2133-7555)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생략」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71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인제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박승진,
박칠성, 서상열, 송도호,
신복자, 왕정순, 유만희,
유정희, 이민옥, 이영실,
이원형, 이종환, 최민규,
한신, 홍국표 의원(20명)

1.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치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입법 경제성과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5조)
-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7조)
-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에 풍부한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
2.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무연고 치매환자 지원
3.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4. 한의약 등을 활용한 치매 예방 건강증진 사업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여가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2. 치매관련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3.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 훈련
4. 치매관련 연구사업
5. 치매인식 개선사업
6.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원
7.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8.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및 후견사무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3. 책임능력·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광역치매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두 조례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안 제7조(지원 사업)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함에 따라 비용발생의 여지¹⁾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문의내용 및 각종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기추진사업²⁾**으로 향후 해당 사업을 확대³⁾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 1) [구체적 명시에 의한 소요비용 검토 필요성] 현행 같은 조례 제6조(지원사업)제1항제1호와 달리 해당 안의 경우 의료비 지원의 진단비 지원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안 제2호에는 무연고 치매환자 지원(다만, 문의결과 주로 행정적 지원으로 확인), 안 제5호에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여가서비스 지원 등을 명시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개정에 의한 소요비용 발생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2) [기추진사업] 서울시 시민건강국 2025년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 24,545,093천원(시비 8,181,698천원) 등
 - 사업기간 : 2025. 1. ~ 12.(연례반복)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 사업내용 :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건강 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운영, **가족지원**, 치매 안심환경 조성, 치매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3) [사업확대 미고려] 통상 기추진사업에 대한 사업 근거규정은 ① 확대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발생 여부가 달라지고, 나아가 ② 다양한 지출요인에 따라 적정 확대규모가 정해지므로 해당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지출계획, 예산 한정성, 재정투입 우선순위 등과 같은 **재정지출 영향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이에 해당 사안 또한 서울시 관련부서(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등)에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현재로서 별다른 확대계획이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 고려사항(통상 불확실성 정보 제외)에서 제외함